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형443-	(전화번호 75-7928)	전경국경	조항 건설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0. 5			1980. 6. 03 시장
보존년한				

부 조 기 관	제1부 시장	경정 6.3.	학	법무담당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담당관		구획정리과장
	도시행정과	과장		상정과장
기안책임자	김영환	80. 5. 29 (전병업)	조	

경 유 수 신 참 조	과안참조	80. 6. 3.	부	
제 목	서울특별시 제미지 관리및 처분규정 개정			

(제1안) 내부결재

1. 서울특별시 영규 제391호로 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 제미지 관리및 처분규정중 일부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역

- 시장 시설 보증금 요율 인상 (1합 → 2합)
- 시장용지 토지 내금 납부기간 단축 (6월 → 50일)

첨부 1. 개정안 요지 1부.

2. 개정안 1부.

3. 제정 대비표 1부. 끝.

(제2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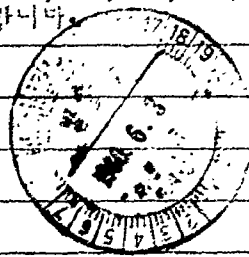
수신 문화공보관

제목 서울특별시 제미지 관리및 처분규정중 개정 규정 제정 의뢰

1. 서울특별시 제미지 관리및 처분규정중 개정 하얏기 의뢰

비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정안 1부. 끝.



改正要旨

1. 市場施設保證金引上
(10% → 20%)

2. 市場用地賣却代金納付期間短縮
(6月 → 60日: 4ヶ月短縮)

서울特別市 例 第 號

발부상시	1980.5.30	7	9
제	42	장	14
제	42		

서울特別市 營費地 管理 및 處分 規程 中 改正 規程

서울特別市 營費地 管理 및 處分 規程 中 다음과 같이 改正 한다

第 10 條 (契約 締結)

第 1 項 第 3 号 : 用途가 市場으로 指定된 用地를 賣却하고자 할 때에는 買收 豫定者 (以下 "買收者" 이라 한다) 와 먼저 假契約 (別紙가 37 號 書式) 을 締結 하여야 한다.
假契約를 締結 하였을 때에는 市場 施設 保證會로 賣却 金額의 10% 以上을 管轄 支張에게 豫留 토록 한다.

第 14 條 (土地 代金의 納付 方法 및 期間)

第 2 項 第 1 号 : 賣却 代金 一時拂 期間은 60 日을 經過 하지 못한다. 다만 同 期間 內에 代金을 納付 하지 않을 때에는 그 經過 日 5 日을 解約 時 까지 年 3% 의 延滞 料子를 加算 納付 하여야 하며 6 月 經過 時에 解約 措置 할 수 있다. 但 市場 用地 賣却 代金의 納付 期間은 60 日을 超過 할 수 없으며 同 期間 經過 時에 解約 措置 할 수 있다.

附 則

699

이 規程은 1980 年 6 月 5 日 부터 施行 한다.

서울特別市替費地管理 및 處分規程改正 (案)

現 行	改 正 案	改正理由
<p><u>第12條 (契約締結)</u> 第1項第3号: 用途外市場으로 指定된 用地를 賣却 하고자 할 때에는 買收豫定者 (以下 買收者 라 한다) 외 他의 假契約를 締結하여야 한다 (別紙第31号書式)</p> <p>假契約를 締結하였을 때에는 市場施設 保證金으로 賣却金額의 1割以上을 管轄區長에게 豫置하여야 한다.</p> <p><u>第14條 (土地代金의 納付方法及期間)</u> 第2項第1号: 賣却代金 一時拮期間은 60日 을 經過하지 못한다. 다만 同期間內에 代金을 納付치 못할 때에는 그 經過日 으부터 解約時까지 年3%의 延滯利 子를 加算納付하여야 하며 6個月 經過時에는 解約措置 할 수 있다.</p>	<p><u>第12條 (契約締結)</u> 第1項第3号: 用途外市場으로 指定된 用地를 賣却 하고자 할 때에는 買收豫定者 (以下 買收 者라 한다) 외 他의 假契約를 締結 하여야 한다 (別紙第31号書式)</p> <p>假契約를 締結하였을 때에는 市場施設 保證金으로 賣却金額의 不割以上 을 管轄區長에게 豫置하여야 한다.</p> <p><u>第14條 (土地代金의 納付方法及期間)</u> 第2項第1号: 賣却代金 一時拮期間은 60日 을 經過하지 못한다. 다만 同期間內에 代金을 納付치 못할 때에는 그 經過日 으부터 解約時까지 年3%의 延滯 利子를 加算納付하여야 하며 6個月 經過時에는 解約措置 할 수 있다.</p> <p>但, 市場用地 賣却代金의 納付期間 은 60日을 超過할 수 없으며 同期間 經過時에는 解約措置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市場早期開設 促進 2. 假需要者 投機 抑制 3. 实际需要者 開發 誘導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新設)</p>

<別紙第37号書式>

市場豫定地假賣買契約書(集)

現 行	改 正 集
市場豫定地假賣買契約書	市場豫定地假賣買契約書
<p>1. 財産表示: 地区 区劃 号 豫定面積 坪 合</p>	<p>1. 財産表示: 外 号</p>
<p>2. 土地代金 一合 外土地賣買에 對하여 賣渡人 申을 持別市長을 (甲)이라 稱하고 買入人을 (乙)이라 稱하여 아래 條項을 約定한다.</p>	<p>2. 土地代金: 外 号</p>
<p>第1條: 이 契約은 (乙)이 第4條에 規定된 殘金 納付時까지 假契約으로 此 期間中 市場法에 依하여 法人 設立登記를 畢하고 殘金 納付와 同時에 登記費 謄本을 提出하여 本契約을 締結 申한다. (乙)이 外條項에 依하여 本契約 締結을 遲延 하므로서 生じた 不利益은 (甲)에게 抗議 不한다.</p>	<p>第1條: 外 号</p>
<p>第2條: 賣却土地의 面積은 換地豫定地로 指定된 面積으로 서 將來換地豫定處分에 依하여 面積에 增減이 生하여도 (乙)은 何等의 異議를 許수 없다. 前項의 土地가 換地豫定되었을 때에는 甲은 乙에게 通知없이 換地豫定으로 該處의 洞名, 地番, 地目과 面積을 乙에게 通知 한다.</p>	<p>第2條: 外 号</p>
<p>第3條: 乙은 契約의 保證金으로 一合 外 号 年 月 日 甲에게 納付 한다.</p>	<p>第3條: 外 号</p>

前項의 保證金은 甲의 意思로 賣渡代金에 充當할 수 있다.

第4條: 乙은 賣渡代金中 契約保證金を 除한 殘額 一會 元
을 西紀 年 月 日 까지 甲에게 納付한다.
前項의 期限內에 殘金을 納付치 아니하면 別當의 權限이

當然 解約으로 致한 契約保證金은 甲의 歸屬으로 한다.
그런 解約의 原因이 賣渡代金總額에서 契約
保證金を 控除한 餘額에 對하여 年別 5%의 延滞料

을 延滞期間에 加算하여 徵收하여 納付期間의 延長은
契約의 日로부터 6個月을 超過하지 不得하다.

第5條: 賣却財産의 所有權 移轉은 乙이 土地代金을 完納한
후에 市場을 開設한 後 土地權定處分後 甲이 履行한다
所有權 移轉에 對하여 負擔은 乙이 負擔한다

第6條: 本契約財産이 乙에게 移轉하기 前에는 甲의 承認
없이 아래各款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許치 不得하다.

- 1) 本契約財産의 賣渡讓渡
 - 2) 本契約財産의 抵當權 其他 制限物權의 設定
 - 3) 本契約財産의 原形 또는 使用目的의 變更
- 但 契約 締結後 本土地에 對하여는 乙이 管理의
責任을 負는다.

第7條: 乙은 土地代金外에 市場을 早期에 開設함을 保證
키 爲한 施設保證金으로 一會 元을 西紀 年
月 日 納付한다.

第4條: _____ 外 同 _____

_____ 甲의 歸屬으로 한다.
"다만, 以下 削除"

第5條: 外 同

第6條: 外 同

第7條: 外 同

第8條：乙은 殘金 納付後 31日內에 市場開設許可手續 申請第次를 履行하여야 한다.

第8條：외 등

第9條：乙이 前 6. 7. 8. 條를 違反하였을 때에는 甲은 乙에 對하여 이 契約을 解約할 수 있으며 乙이 納付한 契約 保證金은 甲의 歸屬으로 한다.

第9條：외 등

第10條：第2條에 依하여 土地面積에 增減이 있을 때에는 增坪의 土地代金은 精算時의 時坪單, 減坪의 土地代金은 契約單坪에 年 6%의 利子를 加算하여 精算한다.

第10條：외 등

第11條：賣買財產에 附屬의 支障物의 撤去補償, 明渡의 責任은 乙의 負擔으로 한다.

第11條：외 등

第12條：本契約의 解折에 異議가 있을 때는 甲에게 決定權 이 있다.

第12條：외 등

第13條：이 契約이 締結되었음을 證明하기 爲하여 甲, 乙 雙方이 署名捺印하고 各各 1通씩 所持한다.

第13條：외 등

賣渡人： 西紀 奉 日 日
서울 特別市 代表 서울특별시장
買入人： 住所
姓名

<별지 제8호서외>

<서울특별시공공저항>

채비지 매각공고 (안) 개정안

현행	개정안
1. 매각재산의 품사 지구명, 총필지수, 면적, 호지, 최고면적, 매각재산 위치	1. 매각재산의 품사 : 좌 등
2. 입찰등록 및 등록일시	2. 좌 등
3. 입찰 및 등록장소 :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찰실	3. 좌 등
4. 입찰방법 : 일반공개 경쟁입찰	4. 좌 등
5. 시장용지 입찰자격 시장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운영할수있는 법인체 또는 낙찰후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이 가능하자	5. 시장용지 입찰자격 : 좌 등
6.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액의 1할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과일로 부터 입찰전일 까지 입찰자의 이름으로 시금고에 예치하고 예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좌 등
7. 시장시설보증금 납부 시장용지 낙찰자는 낙찰액의 1할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시설보증금으로 전금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시장시설보증금 납부 시장용지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2할 이상에 _____
8. 대금납부방법 가.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주} 2 ^일 이내 내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과

나.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일
로부터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수 있으나 월 35%의
금리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연장기간 6개월 내에도 완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계약금은 당시에 귀속된다.

라. 낙찰사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한다.

9. 낙찰자의 유의사항

낙찰사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세 및 족세
납세 필증을 제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 다음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가. 보증금 미달 : 입찰보증금이 입찰액의 1% 미만인 때

나. 기재착오 : 구획번호나 예정면적등 주요기재사항이
틀렸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때

다.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11. 체비지에 대하여는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을 융자
받을수 있습니다.

12. 지상차입물의 철거 및 이전발상 범위에 관하여는 당사자
끼리 아니함으로 권한확인후 응할수있기 바랍니다.

13. 관계법령 및 재산목표는 양식 6식 계획용 6식 행정과에 비치하였
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상세한것은 6식 행정과 (가기27) 코문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계약금은 당시에 귀속된다.

나. 삭제

다. 삭제

나. 좌 등

9. 낙찰자유의사항 : 좌 등

10. 입찰무효 : 좌 등

11. 좌 등

12. 좌 등

13. 좌 등